

시정질문답변서

<주민생활지원국>

□ 질문의원 : 김영희 의원

-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하여
 - 부천시 교육경비 총예산의 10%를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투자 용의는 ?
 - 학교도서관 실태 파악하여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부터 우선지원 용의는 ?

(답 변)

-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2003년 장서확충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교육시설개선사업(리모델링), 사서인건비 지원사업까지 확대 실시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금액은 매년 4~5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총 113개교 3,011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2009년 예산은 688.6백만원임
- 지원대상 학교선정은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부터 우선 지원신청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현지방문조사와 교육경비위원회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신청 받은 학교 중 교육경비지원기준에 적합한 학교는 대부분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학교도서관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보유 장서의 추가 확보 등 열악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에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겠음

□ 질문의원 : 김원재 의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 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시설인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운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답 변)

- 먼저,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별도로 저상버스를 운행치 않고 있음
-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리프트가 설치된 3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저상버스의 차량가액이 일반버스의 2배 이상의 고가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음
- 다만, 향후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보다 편리한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저상버스 추가도입을 검토하겠음

□ 질문의원 : 윤병국 · 오세완 · 김문호 의원

○ 선전만 요란한 경제위기(윤병국 의원)

- 희망근로 사업이 경제위기 대책 차원의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참여자의 선발 과 배정 그리고 포기자의 속출, 비효율적인 사업장 발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창의를 발휘하여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해야 할 것임.

○ 2009년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하여(오세완 의원)

- 희망근로 투자비를 국비, 도비, 시비현황과 부서별 사업명과 배치 인원은 ?
- 근로자의 근로여건과 감독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 임금지급 중 희망근로 상품권의 지급과 사용방법 및 사용처는 ?
-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시민의 냉소적 반응에 대한 대책은 ?

-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적격여부, 참여 근로자의 관리감독 미흡, 30%의 상품권 지급 시 문제점 등 실태를 파악 정부에 건의하고 제안하여 시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람.

(김문호 의원)

- 신청자격 및 재산상태 등 형평성에 맞는 정확한 기준은 ?
-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
- 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

(답 변)

-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에게 일자리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우리시 희망근로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285억 6천만원으로 국비가 81%인 232억 4백만원, 도비가 7%인 22억 2천만원, 시비가 31억 4천만원으로 12%로 편성되었음, 사업비는 인건비가 75%인 214억 2천만원이며, 재료비는 25%인 71억 4천만원임. 사업기간은 6.1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추진됨

- 희망근로사업 지침이 지난 5. 1일 시달되어 사업추진 T/F팀을 5. 7일에 구성하여 사업을 긴급히 추진하였음, 대상사업 발굴과 근로자 모집, 배정 등 행정절차를 5월중에 모두 끝내고 6.1일부터 **109사업장에 4,011명**이 일제히 근로가 시작되었음
- 근로자 모집은 5.12일부터 5.18일까지 1차 모집하여 4,033명이 접수하였으나 선정과정의 결격자 및 중도 포기자를 고려하여 5. 20일까지 연장 접수하여 **총 4,826명이 최종 접수**되었음
- 희망근로 신청자격은 6.1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자로 선정기준은 가구소득, 재산세 납부액, 세대주 유무, 부양가족 수, 등 11항목을 점수화로 심사하여 점수 순으로 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1차 배정인원 4,011명중, 중도 포기자가 1,057명으로 26.3%를 차지하였으며 중도포기 사유는 야외사업장의 기피 등 근무환경 불만족, 출퇴근 거리 불만족,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파악되었음.
- 7월에는 12사업을 추가하면서 233명 배정과 1차포기자 결원490명을 보충하면서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배정, 근거리배정, 연령별 노동 강도 등을 참고하여 배정함으로써 중도 포기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7월 6일 현재** 사업장의 발굴과 근로자 현황은 중앙랜드마크 사업인 산림 내 그린 트래킹조성,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사업 738명, 전국공통사업으로 인감대장 일제정비, 공중화장실개선 등 7사업 540명, 경기도테마사업으로 공장 밀집지역 정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8사업 1,673명, 부천시 특색사업으로 철길 따라 추억 속으로 걷는 길 조성 등 3사업 205명, 자체 발굴 67사업 1,794명 등 **총 120사업에 1일 4,244명이 근로**하고 있음
- 초기 단계에서 사업장 발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1차 사업 중 1개 사업을 폐지하고 **추가로 12개 사업을 발굴하여 233명**이 새로 근로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사업장은 수시로 현장 실사를 통해 계속 개선해 나가겠음

- 희망근로 관리감독은 각 사업장별 책임공무원 지정과 근로자중에서 십장으로 불리는 근로감독자를 지정하여 사업진행과 폭염기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근로임금은 1일 임금 33,000원, 교통비 3,000원, 주휴수당, 월차수당이 지급되어 22일 기준 월 95만원 수준임. 임금지급 형태는 총 근로임금의 30%이상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천시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의 자영업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지역상점과 전통시장 이용을 위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LG 25시 등 체인 편의점, 유흥업소, 공공요금, 학원비 등은 사용을 제한하였음
- 상품권은 농협BC카드로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권으로 발행되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배부되며, 우리 지역 내 농협 **B.C카드 가맹점 41,188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함**. 가맹업소에 “희망근로 가맹점” 표시 스티커를 3만매를 제작 부착하였으며, 홍보문 4만매를 배부하는 한편, 전통시장 입구에 “상품권 환영 플래카드” 게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상품권 사용상 문제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였음
- 다만 고령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의 30%인 월 27만원 이상을 3개월 내 소비에 한계가 있다는 민원이 있음이 사실임.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기업체, 시민단체에서 「상품권 사주기 운동 전개」를 할 계획이며 근로자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겠음
- 희망근로사업 관련 언론과 일부시민의 회의적인 지적 내용은 “근로참여자 중 부유층이 포함되었다”와 “근로시간보다 휴식시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모집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주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 초기에 혼란스럽던 체계가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사업장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지속적인 교육과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근로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축적 이동배치로 희망근로사업이 생산적으로 추진되어 부천의 도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부서별 「희망근로」 사업현황

□ 시

연번	부서명	사업명	사업량	사업기간	1일 평균근로인원	비고
	계	40개 사업			1,218명	
1	총무과	학교환경개선 및 급식도우미지원	초·중학교	6. 1~11. 30	60	
2	자치행정과	사전거보관대설치및정비	1,500면	"	20	
3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 청소년시설 환경정비및업무보조	11개소	"	35	
4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내 환경정비 및 주차 도우미 지원	18개소	"	18	
5	기업지원과	기업체 우편함 달아주기	약 9,000개소	"	35	
6	농산지원과	꽃모생산및농촌일손돕기	3,600명	"	30	
7		농촌환경정비 및 자연 학습장정비	4km, 1개소	"	18	
8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관 도우미	9개 사회복지관	"	41	
9	사회복지과	장애인활동보조 인력지원	장애인복지회관 등 29개소	"	35	
10		지역자활센터행복나눔	부천지역나눔 자활센터	"	37	
11	가정복지과	무료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상동종합사회복지관외9개소	"	18	
12		보육시설 급식 보조인력 지원	보육시설 15개소	"	15	
13		노인일자리사업 보조인력	노인일자리시설	"	23	
14	문화산업과	부천무형문화엑스포집중홍보	홍보물배부	"	5	
15		만화도서관 도서자료 일제정비	장서 230,000권	"	10	
16	문화예술과	복사골문화센터 어린이 도서관 도서정리	장서 35,000권	"	5	
17	시립도서관	도서관 도서정리	6개도서관	"	20	
18		도서관 주변 환경정비	6개도서관	"	12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기간	1일 평균 근로인원	비고
19	환경보전과	유용미생물 활용 환경개선	60톤/월	6. 1~11. 30	5	
20		그린 클린 생활공간 조성	397개소	“	5	
21	청 소 과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시전지역 (37개동)	“	215	
22		공중화장실전수조사 및 DB구축	800개소	“	10	
23	정 수 과	정수장 녹지관리 환경정비	정수장내	“	10	
24	하 수 과	하천쓰레기정비사업	굴포천외6개하 천	“	20	
25	하 수 과	수자원생태공원 정비사업	2개소	“	20	
26	도시계획과	새주소 부여 기초조사	49,950건	“	10	
27	공원녹지과	양묘장유지관리 및 등산로주변정비	제조작업,관수 작업,병해충방제	“	50	
28	공공디자인과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마련 기초조사	가로시설물 (전수조사)	“	15	
29	공 사 업 소 공 원 관 리	상동호수공원 지피식물 식재 및 농업공원 관리	180,130m ²	“	50	
30		공원내 공중화장실 및 환경정비	200여개소	“	50	
31	뉴 개 타 발 운 과 개 발 과	뉴타운사업 행정지원단	3개 지구 28개소	“	6	
32	도 시 균 형 과 개 발 과	체비지 실태 조사 및 관리	체비지 19필지	“	4	
33	공 영 개 발 과	재정비촉진지구 상·하수도 현황조사	상수도 71,583m 하수도 152,101m	“	6	
34	도 로 과	도로시설물 전수조사 및 보수.유지관리	주요간선도로 (L=150km)	“	60	
35	도 시 미 관 과	미신고 옥외광고물신고 (허가) 정비	부천시	“	70	
36		단속업무지원및문화시민 운동도우미	각동	“	140	
37	원미구보건소 보 건 관 리 과	정신보건 재가관리 및 조사	1,500명	“	9	
38	원미구보건소 위 생 과	음식문화수준향상 시민홍보도우미운영	4,578개소	“	10	
39	소사구보건소	음식문화수준향상 시민홍보도우미운영	1,502개소	“	8	
40	오정구보건소	음식문화수준향상 시민홍보도우미운영	1,462개소	“	8	

□ 원 미 구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기간	1일 평균근로인원	비고
	계	25개 사업			1,173명	
1	환경 녹지 과	산림내 Green Tracking 조성사업 (원미산 등산로 휴식년제 및 녹지대 관리)	원미구 관내 (308ha)	6.1~11.30	526	
2	건설 과	도심내 호수 및 하천 정비사업 (하천 시설물 및 주변정리사업)	굴포천등 2개소	“	120	
3	환경 녹지 과	쾌적한 거리환경조성 지킴이	취약지117개소	“	123	
4	권역별 사업추진	원미 도심지 리모델링 사업	원미구전역	“	226	
5	총 무 과	주차유도 헬퍼(도우미) 배치운영	21개소	“	25	
6		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환경 개선사업	5개 전철역	“	5	
7		동청사 시설물 점검	17개동	“	3	
8	시민봉사 과	민원실 안내도우미 및 소유권이전 전산화 D/B구축	관내	“	2	
9	세 무 1 과	지방세3회이상 체납자 현황 실태조사	체납12만건	“	17	
1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실태조사	체납차량	“	10	
11		대형건축물관리현황 조사	1,000건	“	4	
12	세 무 2 과	현년도 체납세(취 . 등록세, 재산세) 납부독려	35,900건	“	12	
13		재산세 반송고지서 송달 활용	6,875건	“	10	
14	주 민 생 활 과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17개소	“	17	
15		장애인행정업무보조	262명	“	2	
16		경로당 공동작업장 인력배치	2개소	“	6	
17		위기가구 수혜자 지원사업	위기가구	“	11	
18	심 곡 1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10개	“	2	
19	원 미 2 동	주말농장 운영	75m ²	“	10	
20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20개소	“	6	
21	역 곡 1 동	주민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도서정리사업	1개소	“	2	
22	도 당 동	장미사후관리 및 사회복지업무 지원	장미마을	“	5	
23	중 동	꽃향기 가득한 거리 가꾸기 사업	홍천길외1	“	15	
24	중 4 동	노인가정 및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191세대 215명	“	10	
25	상 1 동	야생화 꽃길 관리	2.8km	“	4	

□ 소 사 구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기간	1일 평균 근로인원	비고
	계	19개 사업			826명	
1	총 무 과	홍보게시판 및 공공시설물 정비	소사구 관내	6.1~11.30	30	
2	시 민 봉 사 과	시민사랑 민원도우미 사업	소사구 관내	“	25	
3	세 무 과	채납지방세 독촉고지서 전달 지원사업	24,338건 4,494백만원	“	30	
4	주 민 생 활 과 지 원	취약계층 생활도우미 서비스	소사구 관내	“	36	
5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도우미 지원	헤림원, 보육시설등	“	55	
6	환 경 녹 지 과	철길따라 추억속으로 걷는길 조성	옥길동 폐철도 800M	“	120	
7		알록달록 복사골 프로젝트	등산로	“	80	
8		clean 소사, green 소사	취약지구 (57개소)	“	50	
9	건 설 과	쾌적하고 안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소사구관내	“	100	
10	심 곡 본 1 동	아름다운 깊은구지 가꾸기	테마거리등 (5개소)	“	30	
11	심 곡 본 동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팔백문화거리 등 (10개소)	“	30	
12	소 사 본 1 동	저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 방문 지원 및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조성	저소득가정 (20가구)	“	30	
13	소 사 본 2 동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1,000개)	“	30	
14	소 사 본 3 동	살기좋은 소재울 가꾸기 특별기동반 운영	11개통	“	30	
15	범 박 동	휴먼범박조성사업	계수,옥길,범박 일대	“	30	
16	괴 안 동	독거노인 가사 돌보미 사업	독거노인 (80세대)	“	30	
17	역 곡 3 동	걷고싶은 녹색 골목길 조성	역곡천 등	“	30	
18	송 내 1 동	짜투리 땅 화단조성 및 가로정비사업	600㎡, 2,700m	“	30	
19	송 내 2 동	걷고싶은 골목길 만들기 정비반 운영	무단투기취약지구 (4개소)	“	30	

□ 오 정 구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기간	1일 평균 근로인원	비고
	계	25개 사업			794명	
1	총 무 과	구정홍보 사업단 운영	관내	6.1~11.30	14	
2		자전거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91개소	“	7	
3		2009년 오정구민 의식조사	오정구민	“	4	
4	시 민 봉 사 과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서비스		“	1	
5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명찰패용)운영 실태조사	420개소	“	6	
6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1,185점	“	8	
7	세 무 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함 달아주기	1,400개	“	21	
8		지방세 반송 고지서 직접 송달	18,000건	“	14	
9	주 민 생 활 과	희망나눔 해피하우스 만들기	294가구	“	105	
10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사업	16개소	“	10	
11		장애인 활동 도우미 사업	20명	“	10	
12	환 경 녹 지 과	아름답고 청결한 일터 가꾸기	2.3km ²	“	105	
13		자연과 산이 하나되는 그린오정 가꾸기	276ha 녹지대117개소	“	100	
14	건 설 과	꿈과 낭만이 흐르는 생태 하천 만들기	16km	“	110	
15	성 곡 동	살기 좋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관내	“	30	
16		견고 싶은 도로·하천 만들기	6km	“	10	
17		어려운 이웃 무한사랑 지원사업	100세대	“	4	
18	원 중 1 동	깨끗하고 정돈된 먼마루 만들기	관내	“	35	
19	원 중 2 동	쾌적한 동네 만들기	관내	“	30	
20	고 강 본 동	살기 좋은 고리울 마을만들기	관내	“	45	
21	고 강 1 동	주민생활주변 환경정비 사업	관내	“	50	
22	오 정 동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관내	“	34	
23		사회복지 행정 도우미 사업	관내	“	6	
24	신 흥 동	신흥동 관내 생활환경 정비	관내	“	32	
25		주민센터 민원안내 및 환경정비	관내	“	3	

희망근로 선발기준 점수표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 점	비 고
가중치 130점			
소득	4등급분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30(30,20,10,0)	※아래기준 참조
세대재산	4등급분류 (재산세 납부액 기준)	30(30,20,10,0)	※아래기준 참조
세대주	여, 부	10(10,0)	
여성가장(세대주)	여, 부	15(15,0)	
부양가족수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15,10,5,0)	
승용차소유	자동차세 납부액 기준 24만원이하, 24만원 초과	10(10,0)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가정	여, 부	5(5,0)	
청년실업자 여부	여, 부	10(10,0)	
기타 지자체 판단	지자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5(5,0)	실직기간 등
감점사유 -35점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도 포기자	공공근로사업, 노동부·복지부 취업지원사업 등	-30	
기타 지자체 판단	지자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5	

※ 재산세 납부액 배점 기준

추정재산액	1.35억원이하	2억원이하	3억원이하	3억원초과
재산세액 (원/년)	272,250	438,000	813,000	813,000초과
배 점	30	20	10	0

※ 최저생계비 기준 배점표

(단위 : 천원, 점)

구 분	배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이하	30	491	836	1,081	1,327	1,572	1,817
최저 120% 이하	20	589	1,003	1,297	1,592	1,886	2,181
최저 150% 이하	10	736	1,254	1,622	1,990	2,358	2,726
최저 150% 초과	0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노인무료급식사업과 관련하여

- 사업규모 감소 및 주말무료급식 운영 여부
- 노인무료급식소 집단급식소 신고 관련 예산 편성 및 위생문제 등

(답 변)

○ 노인 무료 경로식당은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인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급식대상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조사 및 생활실태를 실시하여 실제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선정함으로써 무료급식사업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르신들이 계속하여 무료급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정기준 및 형평성의 이유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대상 어르신들의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대상자를 축소한 것은 아님

○ 주말무료급식은 4개소에서 하고 있으며 석왕사에서는 연중 매일 무료급식을 하고 부천종합사회복지관, 고강복지회관, 덕유사회복지관은 비영리단체, 종교기관을 발굴하거나 지역사회 후원을 받아 주말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이 밖의 경로식당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말 무료급식을 권유하고 있으나 휴일 복지관 등 시설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향후, 지속적인 권유 등을 통하여 많은 경로식당들이 주말 무료급식에 참여토록 노력하겠음

○ 다음은 무료급식소의 집단급식소 신고에 대한 사항임

- 상시 50인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식품위생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13개 전체 무료급식소에 대하여 집단급식소 신고를 필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 3개구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10개소의 무료급식소는 영양사 채용을 위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못하고 있음

- 영양사 채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 할 경우 집단급식소 1개소 당 1명의 영양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예산 과다부담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 대안으로 권역별로 영양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5조 조항이 삭제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러한 이유 등으로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무료급식소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필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고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지침 상에도 집단급식소 신고를 권고 하도록 만 되어 있음

○ 무료급식소 주방이 비좁아 식당시설로 좋지 못하고 위생이나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무료급식소 13개소 중에 주방 면적이 비좁아 식당 운영에 문제가 있는 곳은 없으며, 위생상태 및 영양, 안전사항 등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식중독 예방지침을 수립하고, 3개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는 3개구 보건소 및 인근 복지관등의 영양사들의 협조로 식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를 안전하게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자활공동체나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배달위주의 무료급식 사업을 제안 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가 행복도시락 배달사업을 2008년 1월에 자활공동체로 인정받고 2008년 10월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위생적인 조리설비와 법적요건을 갖춘 급식업체로 고용창출 및 합리적인 급식제공을 하고 있음. 향후 확대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음

○ 끝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특히 주말무료급식 문제는 금년 하반기에 기관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연결 및 후원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음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9년 들어 예산이 다섯배 가까이 증액되었지만, 상반기 동안의 사업량은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음. 22억원의 예산 중 겨우 2억8천만원만 집행됨
- 예산이 과다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이 과다하다면 어떤 근거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
- 사회적 기업 법률제정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음. 우리시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 실적이 있는지 ?

(답 변)

-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 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임
- 2009년도 당초예산은 5억 2,500만원 이었으나 2회 추경에 16억 7천5백 만원이 증액되어 당초대비 419%가 증가된 22억원이 편성되었음.
상향조정 사유는 최근 경제위기로 발생된 신 빈곤층 지원을 위함이며, 예산의 80%가 국비로서 6월말 현재 3억 3천2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율 15%임.
-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면서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로 휴·폐업과 실직가구를 지원기준에 포함하여 지원기준을 고시하였음
- 그러나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추진, 한시생계지원, 희망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등의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사회적 일자리가 확대 공급됨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가구가 크게 감소되어 신청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문제점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원 대상가구 기준 완화 필요성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음
완화된 기준은 8월 중으로 시달된다는 실무적 통보가 있었으며, 기준이 완화되면 보다 많은 신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경기도 특수시책인 무한돌봄 사업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고 있음, 위기가정지원의 우선순위를 국비사업인 긴급복지 사업비를 우선집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동별로 지정된 무한돌보미를 통하여 긴급복지 대상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참고로 연도별 집행내역은 '07년도에는 예산 4억9천5백만원 확보중 4억5천백만원 집행(91%), '08년도에는 예산 4억3천3백만원 확보중 4억5백만원 집행(93.5%)하였음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정·관리·지원은 “부천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우리시 사회적 기업은 “부천나눔자활후견기관”의 행복도시락주식회사 1개 업체가 지정돼 있으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별도 지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결식아동 급식사업과 노인 식사 배달사업 운영비로 2009. 6. 30일 현재 159,597천원이 지급되었음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무한돌봄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적용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

(답 변)

-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질병, 이혼, 가출 등의 “6가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와 최저생계비 120%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고, 재산이 1억 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기준이 해당됨
- 「기초생활보장」 사업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65,813천원(4인가구)이하로 부양의무자가 능력이 없는 가구가 대상 등으로 무한돌봄사업 지원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무한돌봄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 등의 현행법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지원사업의 지원기준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음
- '08년 11월부터 시행한 무한돌봄 사업의 지원기준을 금년도 1월과 4월에 2차례 개정하면서 개정전에는 “18세~49세까지는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비지원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후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되었음
- 우리시 무한돌봄사업 사업비는 34억5천2백만원이며, 6월말까지 15억7천만원이 지원되어 45.5%의 실적으로 경기도내 2위의 지원실적임

- 참고로 소사구에서 지난 6. 16. ~ 6. 30일까지 무한돌봄 지원을 받고 있는 4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결과 무한돌봄 지원 후 위기 상황이 해소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93%였으며 불만족은 7%였음, 불만족 사유는 지원액 부족, 지원기간이 짧다는 의견이었으며, 향후 무한돌봄 사업은 99%가 지속되어야한다는 의견이었고, 기타의견으로는 학비지원의 고마움, 일시적 어려움에 큰 용기를 주었다는 내용 등으로 무한돌봄 사업이 위기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엑스포 산업관 관련하여

- 산업관 건축시 지급보증을 하였다면 어떠한 자격으로 보증하여 주었는지 ? (지급보증에 대한 사본 답변서에 붙여 제출)
- 가설건축물 허가시 어떠한 건축법을 적용했으며 부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는지 ?
- 산업관 미준공 사유와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답 변)

○ 산업관 건축시 지급보증을 하였다면 어떠한 자격으로 보증하여 주었는지 ? (지급보증에 대한 사본 답변서에 붙여 제출)

- 엑스포 산업관과 관련하여 산업관 건축시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설에 대하여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가설건축물 허가시 어떠한 건축법을 적용했으며 부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는지 ?

- 원미구 상동 529-2번지상의 유원지 부지내의 엑스포산업관은 지상2층 연면적 2,635.06㎡, 구조는 철골구조, 용도는 문화및집회시설(산업전시장)로 '08.9.22 가설건축물 허가를 처리한 바 있음
-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설치 규정은 같은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허가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역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신고로 구분하고 있음
- 엑스포 산업관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내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로서 가설건축물 신고가 아닌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허가로 처리된 사항임

○ 엑스포 산업관 미 준공 사유와 어느 시기까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 (주)리코엔터테인먼트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내부적인 검토와 유원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08. 7. 8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이후 리코 측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현재까지 산업관이 준공되지 못하고 있으나,
-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산업관이 준공되어 본연의 목적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리코 측 대표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준공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준공과 동시에 부천무형문화엑스포와 연계하여 무형문화재 선생을 위한 산업관 운영이 기본이며, 주로 무형문화재작품 홍보와 전시관 운영 및 세계전통음식관, 무형문화재작품 유통, 무형문화재 발굴·지원시스템 구축 등 운영사업계획을 리코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활성화시킬 예정임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관련하여
 - 병원 진료과목 및 운영 계획은 ?
 - 수탁법인 약정서 체결내용 변경과 초기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 시설 내 종교실 설치 운영과 장례식장 설치에 대하여
 -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하여

(답 변)

- 현재 건립중에 있는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의 진료과목은 총 7개 진료과목으로 3개의 내과와 2개의 신경과, 그리고 재활의학과와 가정의학과를 운영할 계획임. 이 진료과목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에 입원되어 계신 어르신 환자의 진료는 물론 병원 시설이 부족한 주변 주민들에게도 외래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향후, 병원을 운영하여 나가면서 주민들의 진료를 위한 추가 진료과목이 필요하다면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추가로 설치 운영토록 하겠음
- 다음, 부천시와 수탁자인 대인의료재단과의 위·수탁 약정서 변경에 대해서는 이 약정서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어 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으나, 약정서 제 13조 규정에서 본 약정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나 약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천시 조례』 등 관련 법규와보건복지부 지침의 해석에 따라 시장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설 운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법규등을 재검토 하여 불합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수탁법인과 협의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음

또한, 「위·수탁 약정서」 제4조(위탁 및 운영조건)에 “노인전문병원”은 독립채산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노인요양원 및 재가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하여 보험수가에 의거 운영되므로 부천시에서는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수탁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항임

- 시설내 종교실은 종교별 우상 등의 설치 없이 최소한의 종교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병원 및 시설 입원(소) 어르신들의 종교성향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교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임. 의원님이 제안하신 우리나라 대표 종교 3-5개소 설치 운영은 시설 내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현재의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반영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시설 내 장례식장 설치에 대해서는 여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상 장례식장 설치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설치가 불가능하며, 설계에 장례식장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또한 장례식장 운영계획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위·수탁약정서를 변경하여 체결할 경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겠음

다만, 공립 노인복지시설이라는 특성상 저소득 어르신 및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 시설 내에서 어르신들이 사망 시 가족이 없거나 늦게 나타나는 경우 장례절차 전까지 또는 가족에게 인계할 때까지 최소한의 기간 동안 사체를 냉동 보관하는 안치실은 필요함

안치실은 시설의 지하 1층에 면적 약 5평 규모로 설치하였으며, 4구의 사체를 보관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증설은 불가함

- 다음 주차공간 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법정 주차면수는 62대이고, 실제 설치된 주차 면수는 67면임 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서 주차면수 부족이 예상되니 지하층을 더 파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던 사항인바, 당시 내방객이 적은 노인전문병원이라는 특수성과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등의 의견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항임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의 개원 초기에는 시설의 상주 근무인원이 90 여명에 불과하여 주차장의 부족문제는 없을 것이나, 점차 시설이 정상화 운영되면서 주차장 부족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주차면수 부족 문제에 대하여는 인접한 공용의 청사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시설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첨부 : 노인복지시설 운영계획(진료과목 및 조직구성 현황) 1부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인력 운영(안)

의료법인 대인의료재단

1. 진료과목 운영 계획안

개원시점	개원 3개월 시점	정상화 시점
내과1	내과1, 내과2	내과1,2,3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신경과	신경과1, 2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가. 진료과목 배치 : 전문의 5-7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함

나. 의사인력 배치 : 노인전문병원은 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 35인 미만으로 배치 예정임.

2. 상주 근무인원 계획

인원현황	개원시점 1개월	개원3개월시점 (50%가동)	개원정상화시점 (100%가동)	개원 후 노인 요양원이 3개 월만에 정상 으로 될 것이 라고 추측함)
노인전문병원	50명(20%가동)	60명(환자50%)	117명(100%가동)	
노인전문요양원	27명(40%가동)	49명(100%가동)	49명(100%가동)	
재가복지지원센터	15명(20%가동)	20명(환자50%)	25명(가정과견제외)	
합계	92명	129명	191명	

3. 개별조직 구성현황

가. 노인전문요양원(100명 기준)

직종별	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치료사	요양 보호사	영양사
인원수	49	1	1	1	4	1	40	1

나. 재가센터(가정파견 요양보호사 제외)

분 야	부 서	직 위	인 원	분 야	부 서	직 위	인 원
노인복지지원센터	노인복지지원센터	센터장	1	주야단기보호서비스부	주야간보호서비스팀 (수용인원 30명기준)	간호사	10
		행정(사회복지사)	5			사회복지사	
		재가팀장	1			행정	
		주야간보호팀장	1			요양보호사	
		팀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2				
합계 10명					단기보호서비스팀 (수용인원 10명 기준)	팀장	5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합계 15명		
재가방문서비스팀	재가방문요양사업팀	팀원 (요양보호사)	필요수	복지용구서비스부	복지용구대여팀	사원	(필요수 에 따라 조정)
	방문목욕사업팀	팀원 (요양보호사)	필요수		복지용구관리팀	사원	(필요수 에 따라 조정)
	방문간호사업팀	간호사	필요수		총합계 25명(요양보호사는 필요수)		
	인원은 점진적으로 조정						

다. 노인전문병원(200병상 기준)

분야	부서	직위	인원	분야	부서	직위	인원
의사	내과계	진료과장	2-3	간호	간호부	부장	1
	신경과	진료과장	1-2			외래	간호사
	재활의학과	진료과장	1		사원		3
	응급의학과	진료과장	1		중양공급실	간호사	1
합계 7명			응급실 / 외래 / 주사실		수간호사	1	
행정	행정부	부장	1		간호사	3	
	사회복지팀	팀장	1		조무사	4	
					합계 52명		
	원무	팀장	1		작업치료실	실장	1
		주임	2			사원	5
		사원	5	도우미		1	
	심사	심사간호사	1	임상병리	실장	1	
		사원	1		병리사	1	
	영양실	팀장(영양사)	1	방사선	실장	1	
		조리사	2		방사선사	1	
		조리원	11				
	시설관리	팀장	1	물리치료	실장	1	
		사원	5		물리치료사	3	
	총무 및 전산	팀장	1	약제	과장	1	
		사원	1		아르바이트	1	
	일용직	청소반장	1	합계 17명			
청소원		4	총합계 117명				
린넨		2					
합계 41명							
간호	3A/3B	수간호사	1				
		간호사	10				
		조무사	8				
	4A/4B	수간호사	1				
		간호사	10				
		조무사	8				

□ 질문의원 : 백종훈 의원

- IPTV 공부방을 활용한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이달 말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 15곳에 IPTV 공부방을 시범 설치할 계획임. 관계기관에서 LCD TV와 교육콘텐츠,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수업은 자원봉사자, 아동복지교사 등이 학습교사를 맞게 됨.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IPTV 공부방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계획에 따른 우리 부천시의 유치 현황과 진행과정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답 변)

- IPTV(Internet Protocol TV)란 생활속 모든 정보를 PC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TV를 통해서 인터넷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4세대 정보화시대 매체로서,
- 지난 6월에 경기도 정보화기획단과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주)KT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소외계층 교육격차 해소 및 방과후 활동지원을 위해 『IPTV 공부방』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지역아동센터 시설수가 20개소 이상인 15개 시·군에 각 1개소를 선정하 바 있음
- 우리시도 부천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시범운영 기간인 2010년 6월 이후에도 자체 비용부담으로 IPTV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가 30인 이상인 시설중에서 1개소(심곡지역 아동센터)를 추천하여 선정되었으며, 7월중에 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 시범기관의 설치비용은 개략적으로 42인치 LCD TV 1,200천원, 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료 월 350천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시범사업의 운영성과와 경기도의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

□ 질문의원 : 김미숙 의원

- 판타스틱스튜디오 사업위탁 계약에 관하여
 -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민간위탁에 있어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근거는 ?

(답 변)

- 2001. 10. 8.부터 판타스틱스튜디오를 티비엔투데이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하였으나 티비엔투데이의 사업부실로 임대료를 미납하고 임의로 전대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2004. 8. 26.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음
- 우리시에서는 협약 해지후 방송사 대관 및 촬영지원, 관람객 편의제공 등 운영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비상대책 근무팀을 가동하면서 사업자 선정도 검토하였으나,
- 빠른 시일내 정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운영 능력이 있는 부천문화재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 이러한 과정에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일부 사항을 누락하게 된 것임
- 판타스틱스튜디오는 개장 이후 160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으로 영상문화도시 부천을 알리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영상단지 전체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부천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 판타스틱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기간, 위탁사무와 그 내용,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 위반시 조치사항 등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하겠습니다,
- 2단계 공방거리가 조성된 후 종합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변채옥 의원

○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 부천장학재단 정관에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
-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

(답 변)

○ 부천시 장학재단의 정관개정 요구에 대하여

- 부천장학재단에 다자녀 가정 학생의 장학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의뢰하겠습니다

○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획기적 지원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 우리 시에서는 출산을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하고자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09. 7. 1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음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부·모 및 36개월 이상 자녀에게는 혈액검사 10종, 운동 처방, 독감예방 접종의 무료 실시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중 3자녀 이상 세대에 보증금(8,000만원 이하)의 70%까지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 저소득층 두자녀 이상 보육료와 취업여성 둘째아 보육료를 매월 2,213명에게 277,021천원 지원하고 있음
-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지원이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수도국>

□ 질문의원 : 류중혁 의원

- 부천시가 생산하는 페트병 수돗물의 생산과정 표기 미비와 유통기한이 1개월로 되어 있는 이유 및 페트병 물은 얼마를 공급하였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페트병 물에 대한 처리대책은 ?
- 유통기간을 병마개가 아닌 상자 등에 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람

(답 변)

- 우리시 까치울정수장에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부터 350ml 페트병 수돗물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수돗물은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물질 함량기준이 없으나 수돗물의 수질기준인 57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페트병을 생산, 공급하고 있음
- “깨끗한 부천 수돗물”이란 문구가 작으므로 향후 라벨 제작시에는 글자표기를 크게 하여 쉽게 눈에 떨 수 있도록 하고 생산과정을 표기토록 하겠음
- 페트병 수돗물은 각종 회의 등 행사시 수요처의 요청에 의해 178개소에 49,000병을 금년도에 공급하였고, 생산단가는 병, 마개, 라벨, 상자를 포함하여 병당 171.5원이 소요되며, 까치울정수장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페트병 물은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있으며, 식음료품의 경우와 같이 소비자(구입자)가 유통기간이 경과되면 폐기처분하거나 먹지 않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 페트병 수돗물을 요청하여 공급받은 수요자가 먹지 않거나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됨
- 페트병 수돗물의 유통기간을 시험한 결과 3개월까지 이상이 없었으나 세균증식의 문제가 없고 수돗물 음용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유통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생산 공급하고 있음 (타시, 군도 유통기간을 1개월로 하고 있음)

- 유통기간을 마개상단에 표시하고 있으나 추가로 박스에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겠음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푸른부천21 실천협의회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관하여
 - 현재보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정안임, 현행 규정에 없는 계약기간을 신설함으로써 연속적인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됨.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노동관계법에도 문제가 될텐데 시행규칙 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책임질 것인지 ?
 - 보수조건도 개정한다는데 현행 보수기준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굳이 타 지방의제 사무국 평균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매년 시세가 다른 타 시·군의 보수를 산술평균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
 - 개정취지를 타 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타 시군 상근인력 상황, 보수상황은 어떠한지 현황을 비교 제시 바람.
-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개정규칙안의 철회를 요구함.

(답 변)

-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은 부천시 의회에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제 사무국 상근 직원의 조정검토” 권고 사항과 2009년도 푸른부천21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예산액 2억8천6백만원에서 간사1명 인건비 등 5천5백9십만원이 삭감된 2억3천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음.
 - 2009. 1. 13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참석:16명)하여 사무국 상근인력 조정에 대한 회의 결과 부천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무국의 업무량과 자연감축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위적인 인력조정 보다는 직원채용 및 보수지급 기준에 대한 조례규칙 개정 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함

- 지방의제 관련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진 현황 조사 결과 사무국 직원 2명 근무가 21개지역, 3명 근무가 8개지역, 4명 근무가 1개지역, 미실시가 1개지역이며, 사무국 직원이 2명인 근무 시·군이 대부분으로 우리시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성과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음

※ 경기도내 타 시·군 지방의제 관련 상근인력 및 보수 현황 : 별첨

-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은 “사무국 상근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채용하고, 사무국의 사업성격 및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직원 2명(간사1명과 필요시에는 사무보조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조정하고, 사무국장 및 간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채용기간 연장시 2년마다 채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무보조원은 협의회장이 임명하여 사업기간의 범위에서 고용계약을 체결 하도록”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현행 보수체계는 “사무국장은 일반직공무원의 6급 5호봉, 직원은 8급 3호봉 및 9급 3호봉”으로 호봉 승급이 없는 고정 호봉 보수로 호봉 승급이 반영되지 않았고, 경기도의 타 지역의 경우도 보수지급 기준을 조례규칙으로 정한 예가 없는 등 개정이 필요하여 푸른부천 21 실천협의회 운영위원에서 사무국직원의 보수를 결정하되 별도의 보수기준이 없기에 타 시군의 평균 보수를 반영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임

○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사무국 직원의 “계약기간과 연임사항, 타 지방의제 평균보수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보수결정 등”의 개정 사항은 노동관련 근로기준법의 위배사항은 없으며, 향후에도 노동 관련법의 위반 없이 추진할 것임

○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부천시 푸른부천실천협의회를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됨으로 개정안 철회는 불가함

붙임 : 경기도내 타 시·군 지방의제 관련 상근인력 및 보수 현황 1부

□ 경기도 관내 시·군별 지방의제 상근인력 및 보수현황

○ 지방의제 사무국 직원 현황 (단위 : 시·군)

계	2명 근무	3명 근무	4명 근무	비 고
30	21	8	1	동두천시 지방의제 21 미실시

※ 부천시 사무국 근무인원 : 3명

○ 지방의제 2009년 예산 현황 (단위 : 시·군)

계	2억 초과	1억5천만원~2억	1억 ~ 1억5천만원	1억 미만	비 고
30	5	8	11	6	

※ 부천시 지방의제 예산 : 230,004천원

○ 지방의제 사무국장 2008년 보수현황 (단위 : 시·군)

계	3천만원 초과	2천5백만원~3천만원	2천만원~2천5백만원	2천만원 미만	비 고
30	4	12	9	5	

※ 부천시 사무국장 보수 : 25,471천원

○ 지방의제 선임간사 2008년 보수현황 (단위 : 시·군)

계	2천만원 초과	1천5백만원~2천만원	1천5백만원 미만	비 고
30	6	16	8	

※ 부천시 선임간사 보수 : 19,011천원

지방의제 21 시군별 세부추진 현황

시군명	2009년 예산	사무국 직원 (명)	인 건 비					비고
			합계	사무국장	간사1	간사2	간사3	
평균	144,380,653		45,999,592	24,490,722	17,702,633			
수원시	250,000,000	2	33,600,000	22,800,000	10,800,000			
성남시	198,495,000	2	42,120,000	25,560,000	16,560,000			
고양시	119,868,590	2	45,259,400	26,972,400	18,287,000			
부천시	230,005,000	3	61,692,520	25,471,440	19,011,240	17,209,840		
용인시	151,902,000	2	44,160,000	26,400,000	17,760,000			
안산시	211,000,000	4	56,775,000	24,750,000	18,750,000	8,775,000	4,500,000	
안양시	128,500,000	2	37,600,000	22,400,000	15,200,000			
남양주시	110,000,000	2	33,900,000	19,400,000	14,500,000			
의정부시	100,000,000	2	35,200,000	19,200,000	16,000,000			
평택시	180,000,000	2	44,400,000	25,200,000	19,200,000			
시흥시	150,000,000	3	81,964,000	30,492,000	26,660,000	24,812,000		
화성시	240,000,000	3	78,368,280	33,000,780	24,907,260	20,460,240		
광명시	189,711,000	2	53,968,000	32,092,000	21,876,000			
과주시	220,000,000	3	37,097,000	22,926,000	14,171,000			
군포시	177,414,000	3	68,790,000	26,940,000	22,620,000	19,230,000		
광주시	145,000,000	2	44,200,000	26,100,000	18,100,000			
김포시	124,513,000	2	39,600,000	22,800,000	16,800,000			
이천시	80,000,000	3	40,242,000	23,984,646	16,257,354			
구리시	110,700,000	2	44,200,000	26,300,000	17,900,000			
양주시	70,000,000	2	40,517,000	22,684,500	17,832,500			
안성시	145,000,000	3	69,600,000	28,000,000	22,400,000	19,200,000		
포천시	60,000,000	2	31,800,000	18,000,000	13,800,000			
오산시	182,134,000	2	43,800,000	26,400,000	17,400,000			
하남시	113,800,000	2	45,360,000	28,080,000	17,280,000			
의왕시	104,838,000	2	34,052,000	20,752,000	13,300,000			
여주군	80,739,000	2	35,145,000	20,850,000	14,295,000			
양평군	70,000,000	2	31,200,000	19,200,000	12,000,000			
과천시	180,000,000	2	54,896,000	30,648,000	24,248,000			
가평군	135,000,000	2	43,331,550	28,467,900	14,863,650			
연천군	72,800,000	3	27,150,000	8,850,000	18,300,000			

□ 질문의원 : 박노설 의원

-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추가 증설건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초안) 1·2차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됨.
 - 향후 발전소 추가증설 허가관련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 증설 불허를 위한 부천시 복안과 대책은 ?
- 지난 4월 21일 부천시에서 지식경제부 및 환경부에 보낸 의견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 부천시에서 보낸 “인천시 택지개발계획 지정시 인천시 공급분 별도 검토 시행” 의견이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 및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

(답 변)

- GS파워 부천열병합발전소 추가 증설 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무산 이후에 행정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GS파워에서 2009. 7. 3(금)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무산에 따른 생략 공고를 하였고, 2009.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현재 까지의 주민 및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2009. 9월중(예정) 지식경제부에 발전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사료됨
 -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직접 협의하며, 지식경제부는 협의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 공사계획 인가 여부를 확정하게 됨
 - 따라서 부천시는 지역주민, 국회의원 등과 연합하여 지식경제부 및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여 부천시 대기 및 생활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됨을 알리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열병합발전소 증설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불가함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임

○ 부천시가 지난 4월 21일에 지식경제부 및 환경부에 보낸 의견서는 붙임과 같음

- 그리고 부천시가 보낸 서안문 내용 중 “인천광역시 택지개발계획 지정시 자체 도시기반시설(전기·열공급설비 등)의 설치 검토”를 요청한 것은 부천열병합발전소가 부천시 택지개발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치 운영된 시설이며

인천광역시 부평구 및 계양구의 도시계획 수립 시 열병합발전설비가 신설되면, 기존에 인천지역에 공급하던 GS파워의 열 공급량을 부천지역에 공급할 수 있어 추가적인 증설이 필요치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집중화를 예방할 수 있고, 우리시의 대기환경을 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앞으로도 지식경제부의 정책에 부천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고자 함

(별첨 자료)

부 천 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천열병합발전소 증설계획에 따른 건의

1. 우리 국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여념이 없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 건설예정인 GS파워(주)의 열병합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시민의 우려와 부천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현재 우리시 관내 오정구 삼정동 363-3번지에 소재한 부천열병합발전소는 1990. 2. 24 부천중동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에 따라 1991. 5. 22 착공, 1993. 2. 28일 1호기의 상업 운영을 시작한 시설로 당초 발전설비는 한국전력공사, 열공급설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운영하였으며, 1997년 국가 경제위기(IMF)에 따라 발전설비 및 열공급설비를 민간업체인 GS파워(주)에 양도(2000. 6. 22)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4. 그러나 현 운영자인 GS파워(주)는 1호기 운영과는 별도로 향후 부천시 뉴타운지역 건설을 이유삼아 기존 시설부지내에 2호기 발전설비 및 열공급설비를 증설코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였고, 조만간 지식경제부에 발전설비 증설관련 승인,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관련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5. 하지만 부천시와 부천시민은 기존 1호기의 건설목적이 부천시 중동과 상동 택지개발지구는 물론 부천시 지역에 전력과 난방을 우선 공급코자 건설된 것으로 알고있는바 현재 GS파워(주)가 1호기를 운영하며 부천시 지역 외에 인천시 부평구 및 계양구 지역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부천시 뉴타운 건설시 전력 및 열공급을 이유로 2호기를 증설코자 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6. 또한 현재 부천지역은 18년전 부천열병합발전소 1호기 건설당시와는 주변지역 환경여건이 상당히 변화되었고, 15년 이상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및 백연현상으로 인해 인접 주택지역(최단 100M 이내)에 미치는 환경 악영향이 지속 되었다는 점과 부천지역이 대기환경오염물질 총량규제 대상지역으로 부천열병합발전소가 부천시 대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2001년 기준 부천시 질소산화물 배출규모의 17.9% 해당 사업장임)으로 여타 산업현장의 증설계획 등 형

평성을 고려할 때 부천시 지역내 증설은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부천시민 의견수렴 결과 : 의견서 제출 9,043명 전원 반대)**

7. 더군다나 부천시와 시민들은 부천열병합발전소 1호기 당초 건설계획처럼 1호기 운영에 따른 전력 및 열공급은 부천시에 한해야 하며(뉴타운지역 공급 가능), 인천시 공급을 위한 시설증설은 인천광역시 택지개발계획 지정시 별도로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8. 끝으로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기존시설도 시설보완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에너지로 적극 검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9. 그리고, 지금의 지구환경 사용권한이 우리에게 있기 보다는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함께 호흡하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부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0. 이에 부천시와 시민의 여망을 담아 장관님께 건의하오니 열병합발전소 증설계획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수렴 및 검토의견 1부. 끝.

부 천 시 장

수신자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주사보 **김주영**

지방환경주사 **이상철**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부시장 **이지현**

04/20
시장 **홍건표**

협조자

시행 환경보전과-6731 (2009.04.20.)

접수

우 420-736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큰길 138 (중동 1156) /www.bucheon.go.kr

전화 032-320-2376

전송 032-320-2239

/ dongsan690@bucheon.go.kr

/ 공개

□ 질문의원 : 김미숙 의원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 제대로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불법투기자들의 쓰레기봉투 값까지 대신 내어준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
 - 보지도 않고 감시도 하지 않으면서 운영비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
 - CCTV 상황실 인력 증원 및 상시로 CCTV를 보면서 체크 및 검색 조치할 용의와 성남시와 의왕시 등에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도입할 용의는 ?
 - 모형 단속카메라의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효과와 근거가 있는지 자료를 통한 답변

(답 변)

- 제대로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 불법투기자들의 쓰레기봉투 값까지 대신 내어준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쓰레기 경고스티커 부착, 미수거 등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보지도 않고 감시도 하지 않으면서 운영비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와 관련하여서는,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 등으로 구청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음
 - CCTV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환경기동반 및 동 청소담당으로 하여금 매일 무단투기상태 확인, 투기지역 인근에 투기장면을 부착 “무단투기자를 찾습니다” 전단 부착, CCTV 설치 인근 지역에 종합안내문 배포 등을 추진하여 무단투기 근절 사전예방 및 취약지 해소에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투기자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 기피 등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게 현실임

- CCTV 상황실 인력 증원 및 상시로 CCTV를 보면서 체킹 및 검색 조치할 용의와 성남시와 의왕시 등에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도입할 용의에 대하여는,
 - 원미구에서는 지난 2회추경시 반영된 80백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27개소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황실 설치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하여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모형 단속카메라의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효과와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 모형 단속카메라의 실효성 측면을 검토하여 철거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음
- 지금까지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CCTV 모니터링 강화 등 투기자 색출을 철저히 하여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음

<도시국>

□ 질문의원 : 한선재 의원

-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화장실에 관련하여
 - 화장실 현황, 개방실태, 평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 시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화장실 관리대책은 ?

(답 변)

- 공원 내 화장실은 근린공원 32개소, 어린이공원 50개소 총 82개소이며 근린공원 19개소는 민간에 위탁하고 나머지 63개소는 공원관리원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3월~ 11월까지의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24시간 개방을 하고, 동절기인 12월~ 2월까지의 화장실 동파방지 및 노숙자 야간 투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08시~18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음
- 쾌적한 공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노후화장실 리모델링, 시설물 보수, 지속적인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많은 근린공원 및 토·일요일(공휴일)에는 다소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원의 감독 강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겠음
- 또한, 지속적 청소 및 환기를 실시하며, 친환경 미생물(EM)을 활용한 악취 제거 및 소독을 실시하고 화장실 점검 강화를 위한 청소 상태, 시설물 훼손 유무 등을 1일 3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한 화장실 안내판 및 노후 시설물을 점차적 교체와 점자 블록, 표지판 설치, 진입구 방지턱 제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코자 함

□ 질문의원 : 류중혁 의원

- 중앙공원 분수대에 녹조현상으로 인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에 대한 대책은?

(답 변)

- 중앙공원 분수대는 1993년에 설치되어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는 상태로 지하수와 수돗물을 이용하여 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5월 ~ 10월까지 분수를 가동하고 있음
- 중앙공원 분수대는 많은 면적의 물을 담수함에 따라 이물질, 부유물 및 낙엽 등으로 인하여 담수된 물을 그때그때 갈아 주어야 하나 예산사정상 월 2회 물 교체 및 청소를 함으로써 다소 지저분하게 느껴짐
- 앞으로는 여름철에는 분수대에 대하여 월3회 물 교체 및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질문의원 : 김영희 의원

○ 오정대공원 축구장 시설에 대하여 ?

(답 변)

- 오정대공원 내 축구장은 당초 축구 전용구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아니라 오정구민들의 체육대회와 다양한 행사를 위하여 설치한 다목적 시설로 계획되었음
- 축구장내 육상트랙은 당초 계획은 없었으나 주변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 지역주민 및 오정구에서 건의가 있어 시에서는 공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설치된 시설임
- 음향장치는 미아방지, 음악, 공원이용 안내방송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축구장 전용 음향은 이동식으로 관리자 창고에 별도 보관하여 각종 행사때 이를 이동 사용하고 있음
- 축구장내 앰프사용을 위한 전기는 화장실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부석내 분전함에 코드가 별도로 설치되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운동장내 어두운 조명에 대하여도 조만간 라이트 시설을 보완하여 야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본부석에 설치된 웬스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당초 설치 안전기준 1.2m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높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1m이하로 설치하였음
- 축구장내 각종 행사를 위한 집기류 등 자재 보관을 위하여 본부석 하부공간에 창고를 설치하여야 했으나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설치하지 못하여 본부석 바로 뒤에 관리사와 창고를 별도 마련하였음
- 오정대공원 확대조성을 위하여 2010년에 공원이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오정대공원 확대 조성시 지역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자전거전용 산책로 등 미비점을 보완토록 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김영희 의원

- 공원 조경 수목 보호관리에 대하여 ?
 - 수목선정, 수목전지전정, 병해충방제 등 공원관리 방법은 ?
 - 식재 후 A/S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
 - 공원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
 - 공원관리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은 ?

(답 변)

- 공원 내 식재수목은 테마에 맞게 대상지 토질을 고려하여 활착 · 식생이 용이한 수종을 선정하여, 랜드마크적 장소에 특수목, 조형소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음
- 수주어린이공원과 오정대공원 내 고사목의 원인은 자연적인 요인과 인공적인 요인이 있으나, 토양 등의 이유로 활착이 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경식재는 2년이라는 하자기간을 정해 놓고 있으며, 하자발생시 고사목은 고사즉시 제거하여 공원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공자로 하여금 수목식재 적기인 봄 · 가을에 하자 조치코자 함
- 공원내 수목전지전정은 나무의 특성과 수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중 적기에 수형조절을 하며, 병해충방제는 병해충 예찰조사를 실시하여 병충해 발생시 공원관리원과 관리공사(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즉시 방제함으로서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공원 조성은 대상지의 특수성, 지형 및 지세 등을 고려하여 특색 있게 테마를 부여하여 지역구 중점사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오정대 공원의 경우 오정구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자전거와 체육 및 생태환경을 테마로 조성하였음
- 공원관리 업무는 단순한 청소뿐만 아니라 전지전정, 병해충방제, 잔디 깎기, 제초작업, 초화류식재, 시설물관리 등 전문기술을 요하고, 장비를 다뤄야 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소사로에 보도육교를 만들어 산림과 시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녹도길 조성으로 등산벨트를 만들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등산로 입구에는 먼지털이 에어펌프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

(답 변)

- 먼저 소사로 보도육교설치에 대하여는 부천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소사 ~ 원시간 전철공사와 연계하여 공사가 완료 되는 시점에 맞춰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부천을 상징할 수 있는 시설물과 보도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 도로개설로 인한 산림녹지축단절지역 복구에 대하여는 현재 6개소가 기 설치(작동, 까치울, 은데미, 여월, 하우, 여우고개)연결되었고, 고강선 사유적공원과 계남대로 원미산절개지는 설치(계획)중에 있음. 그리고 비전부천장기발전계획에 에코브리지 조성 및 공원과 산림을 연결할 수 있는 생태길 조성사업을 수립 한 바 연차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 전체가 하나의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하겠음
- 등산로 입구 에어펌프시설(흙먼지 털이)설치는 현재 원미산 산림욕장 입구와 성주산 제3약수터 위, 성주중학교 옆, 은데미공원 입구 등 산림 이용객이 많은 4개소에 우선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설치 후 관리상태 및 이용객들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설치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음

□ 질문의원 : 류재구 의원

○ 도시 재개발과 관련하여

- 우리시 전체를 백지 상태에서 재구성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회, 경제, 문화, 교육시설 등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시설할 것인지 집행부의 입장은 ?
- 지금 시작하는 재개발 지역과 신축건물부터 1 건물 1 디자인 제도를 도입 다양한 건축물 박물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
- 이를 위해 공무원이나 민간인 시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시가 재원을 투자 국제수준의 도시 및 건축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 먼저, 우리시 전체를 백지 상태에서 재구성하고 재개발을 시작하는 현 시점에서 도시를 다시 설계해 나가는데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천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며,
 -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에 맞추어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교육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을 시민의 수요에 따라 적정위치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기본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공람·공고를 실시할 뿐 아니라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수용하겠음

○ 다음은 지금 시작하는 재개발 지역과 신축건물부터 1 건물 1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우리시는 중·상동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시가지 대부분의 건축물이 획일적인 형태로 건립되어 다양한 도시경관을 유지하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선 뉴타운사업 시행시에는
 - 가로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도시 공공디자인과 주거공간의 환경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 도시환경문제에 대비하고 생물서식 공간 확보 등 생태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생태 면적률 등을 도입하겠으며
 - 특히, 건축물 형태의 다양화를 위하여 건축계획의 예술성·작품성·기능성, 입면 및 주동형태의 다양화, 친환경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내 건축설계경기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건축설계경기 신청 조합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
-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에도 다양한 건축물 도입을 위하여

- 전체 세대의 30% 이상을 탑상형으로 계획하고 다양한 층수 도입으로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 경관유지와 조망확보가 필요한 구역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공동주택의 저층부 피로티 설치와 옥탑부의 조형 디자인 및 간선도로변 야간 경관 조명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개방감과 주변과 어우러지는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
 -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시책과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금년 3월에 공공디자인과를 신설하고, “도시디자인기본계획용역”과 디자인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부천시도시디자인조례” 제정도 추진 중에 있음
 - 이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확산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건축물 신축시 사전 디자인 심의를 시행하고, 조례가 제정되는 2010년 중 “부천시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경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개념을 적용 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임
-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다양한 건축물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자해서 국제수준의 도시 및 건축사를 고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선진 사례 등을 조사하여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검토토록 하겠음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중앙공원에 대하여 ?

- 중앙공원 인도에 노점상을 영업장소로 제공하는 이유는 ?
- 주말 영업을 위하여 대여용 자전거를 인도에 일년 내내 적치해 두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이유는 ?
- 주말 차 없는 거리를 통째로 내주고 전동 스쿠터 영업장소로 내어 주는 이유는 ?
- 중앙공원 조깅트랙의 전체적인 보수계획은 ?
- 중앙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매연과 먼지 없는 쾌적한 공원 만들기에 대한 대책은 ?

(답 변)

-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주말 및 공휴일에 노점상, 자전거 적치 등을 수차례 걸쳐 단속 하였으나, 단속후 재 발생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는 노점상 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차 없는 거리 입구 차단시설(바리게이트)에 단속 용역원을 집중 배치하여 노점상 진입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음
- 전동 스쿠터 등 점령에 대하여는, 『차 없는 거리』 안전요원을 증원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청소년동아리활동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 활동을 활성화시켜 『차 없는 거리』가 청소년 및 시민 문화 공간으로 활용 되도록 노력하겠음
- 중앙공원 조깅트랙은 2003년말에 설치 완료하여 파손되고 배수가 불량한 곳은 부분적으로 보수하여 왔으며, 운동을 위해 조깅트랙을 이용하는 시민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노후 및 파손으로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임

- 조깅트랙 전체를 일시에 재포장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돼 우선 훼손 정도가 심한 곳부터 부분보수토록하고 2010년도 본 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 중앙공원 조깅트랙에서 운동시 매연과 먼지로 인한 불편사항은 차도와 조깅트랙 사이에 완충녹지공간과 수벽을 조성하여 매연과 먼지를 차단하고, 중앙공원 주변 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여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공원 쓰레기통 관리에 관하여 ?
 -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이동식 쓰레기통을 설치할 용의는 ?
 -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로 분리하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설치할 용의는 ?
 - 공원 이용시민을 위해 주말에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용의는 ?

(답 변)

- 공원에 쓰레기통 설치문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각 공원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각 가정의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무분별하게 공원 쓰레기통은 물론 바닥에 투기하여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불편과 도시공원미관을 저해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분리수거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 시행을 기점으로 기존의 쓰레기통을 제거하고 “공원 이용시 발생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통하여 공원 청결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주말이나 공원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일시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아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공원이용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시민들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각 공원에 공원관리원이 배치되어 관리하고 있어, 공원관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관하여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공사 관련하여 제151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한 외장재 연결철물에 대하여 엑스레이 또는 육안조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안하는 이유 ?

(답 변)

- 제151회 임시회 시정 질문 내용 중 X-RAY촬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 “설계도서에 따라 적법 시공하여 문제가 없으며 타당한 문제제기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음
- 참고로 외벽 석재붙이기 공법 중 앙카용 핀 사용여부에 대하여 공사현장 전면책임감리용역 책임감리원의 기술검토서(앵커세트,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검사증명서, ks인증서), 석재공사 시공순서, 앙카용 핀 사용 검토결과 및 종합의견 등이 담긴 기술 검토서를 시공 중인 사진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였으며,
- 본 공사현장은 전면책임감리용역대상으로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리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발주청에서도 제 규정에 따라 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질문의원 : 강일원 · 백종훈 의원

- 소사구 계수동 산105-10번지 할미산 일원 대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대학교 조성시 설치될 체육시설 및 휴식 공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필요성이 있는바 집행부의 입장은 ?
- 동양공업전문대학으로부터 학교이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해당 대학과 유치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

(답 변)

- 소사구 계수동 산105-10번지 일원의 동양공업전문대학 이전과 관련해서는 2009년 4월경 학교이전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적극 유치코자 하였으나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 대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대학교)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조건을 갖추어 제안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 대학교 유치시 학교측과 협의를 통해 대학교 부지내 공원, 체육, 휴식 공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음

□ 질문의원 : 강일원 의원

- 현대 홈타운 3단지 사업인가 신청 시 공원조성을 할 필요가 없는 법적 근거는 ?

(답 변)

- 현대 홈타운 개발은 개인사업주체인 기양건설(주)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문제가 된 3단지 내의 개인 토지는
- (구)주택건설촉진법에서 개인사업주가 토지를 강제 매수 할 근거가 없어 협의 매수하지 못한 채 동 부지를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의하여 2000. 11.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리하였음
- 일반적으로 단지 내 공원조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 수립 시에 용적률 등의 완화 조건으로 사업부지내의 일부를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있으나
- 현대 홈타운의 경우에는 사업개발방식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 (구)주택건설촉진법에 공원 등을 설치할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

□ 질문의원 : 백종훈 의원

- 그 동안 범박동 지역에 공원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와 향후 공원조성 계획은 ?

(답 변)

- 범박홈타운 지역은 개인사업주체인 기양건설(주)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계법에 의거 조경면적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되었으며 현재 주변에는 괴안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 따라서 범박동 지역의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를 위하여 범박택지개발지구에는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녹지 등을 조성 중에 있으며, 계수·범박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도 공원 녹지 등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산림을 주변 지역 발전추이에 따라 공원으로 확대 지정을 검토하겠음

<뉴타운개발국>

□ 질문의원 : 한선재 의원

○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후속절차 진행여부는 ?

(답 변)

-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내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고려하고 미래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사구청 주변에 초등학교 1개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음
- 소사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학교설립 계획을 반영하고자 3차에 걸쳐 교육청과 협의하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2009. 6. 9일 우리시가 주재하여 한선재의원님, 최운용 도 교육위원, 부천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2009년 6월 17일 부천교육청으로부터 간담회 의견과 관련 현재 상태에서는 초등학교 신설 요인이 발생치 않으나, 소사지구의 학생수용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학교부지는 11,000m²이상으로 무상공급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학교부지의 무상공급은 도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는 향후 소사지구 촉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소사본 7E구역 및 각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 시 평형별 주택공급계획 조정 등으로 계획 인구의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소사구청 주변의 공원 부지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시기에 소사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초등학교가
입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질문의원 : 서강진 의원

- 뉴타운 계획과 관련 일부구역은 사업성이 없어 조합원들과 추진위원들 간에 이견이 많고 원주민들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용적률 상향과 기반시설 부담금을 낮추어 주는 방안은 ?
- 주민 간 갈등, 민·관의 갈등으로 뉴타운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대안은 무엇인지 ?

(답 변)

- 소사재정비촉진계획 상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제공을 통해 완화 받는 용적률을 추가하여 결정된 사항임
- 소사지구 내 주택재개발 사업의 평균 용적률은 245%(설계경기 적용 구역은 인센티브 5% 추가)로 촉진지구 이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235%의 용적률 보다 높아 사업성은 확보 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주택경기 불황 및 분양가 상한제 등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시의 건전한 발전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도시경관 등을 위해 용적률 제한은 반드시 필요함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관계법 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재정비촉진계획 상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에 대한 건축비용에 대해서 국비·도비등 공공이 부담 시 주민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단계별로 촉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확보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등에 대해서는 국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재정비 촉진사업은 주민간의 합의를 통해 추진되는 절차사업으로 주민간의 갈등, 주민과 관과의 갈등은 없을 수 없으나 갈등이 발생시에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관련법에서는 일정기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시 시장이 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를 지정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가능한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민간 주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갈등요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주민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건축설계경기의 목적 및 장·단점, 5%의 추가용적률 제공 이유는 ?
-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수 및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
- 뉴타운지역의 세입자대책에 대한 방안은 ?

(답 변)

- 우리시 3개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이 소사지구(2009.5.1), 원미지구(2009.5.11), 고강지구(2009.6.30)순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현재 구역별 추진위원회 승인 현황은 소사지구 25개구역중 10개 구역, 원미지구 10개 구역중 5개 구역이 승인되었음
- 건축설계경기의 목적 등에 대하여
 - 우리시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건축설계경기를 통하여 독창성, 예술성, 친환경성 등이 가미된 다양한 유형의 건축디자인을 유도하여 공공 및 도시디자인을 접목한 주동형태배치 등 도시경쟁력 향상과 미래도시형 명품 뉴타운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설계경기시행으로 기존시가지의 단일형태 아파트 일색의 구조를 개선하여 각 단지별 특성이 있는 수려한 도시경관 조성 및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아파트 단지의 가치 상승효과가 기대됨
 - 건축설계경기를 통하여 건축설계를 하는 경우 일부 비용의 문제를 들 수 있으나, 설계비 기준은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참고하여 설계자와 조합이 협의하도록 지침에 반영하였음
 - 또한, 설계경기를 하는 경우 행정적인 절차로 인하여 업체 선정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합에서도 설계사를 선정하여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각 구역의 세대수별로 기간을 정하였으나 일부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정비사업 전체기간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건축디자인을 통한 명품 뉴타운 조성을 위하여 건축설계경기를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나, 권장사항 이행 시 건축설계비 등 보상의 일환으로 추가 인센티브로 용적률 5%를 제공 함. 다만, 건축설계경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별도의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도록 하였음

○ 정비사업 및 촉진사업 지역의 임대아파트의 인수방안 등에 대하여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 5. 27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10.1.1일부터 시행 예정임 . 다만, 인수절차 및 방법, 인수가격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되어있음
(현재 대통령령 미개정)

○ 뉴타운지역의 세입자대책에 대한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소사지구 국회의원을 통하여 세입자 손실보상 등 법률 개정안을 건의하였으며,

- 재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며, 구역별 계획세대의 17%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세입자에게 공급됨
- 또한,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대책을 수립 시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5.27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2009.11.28일부터 시행 예정임

<건설교통국>

□ 질문의원 : 송원기 의원

- 중동신도시지역 아파트 주변 산책로 보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울창한 숲도 살리고 산책로도 밝게 하여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

(답 변)

- 중동신도시내 보행자도로는 조성 된지 10여년이 지나 숲이 우거져 야간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보행자도로의 보안등 램프를 2008년에 보람·포도마을 18등, 2009년에 은하마을 외 7개로 100등을 교체하여 중동신도시 보행자도로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앞으로도 중동신도시 보행자도로 내 보안등 실태조사를 하여 야간에 어두워 통행에 불편한 보행자도로의 보안등을 점진적으로 확대 정비해 나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류중혁·윤병국·류재구·김관수·강동구 의원

- 감사원이 부천시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요청한 내용과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 2007년 8월22일 소풍으로부터 8월중 15억원을 납부하고 11월30일부터 2008년 8월30일까지 4회에 걸쳐 109억원을 분납하겠다는 내용에 의하여 이행각서 제9조의 이행보증 약정(지하보행통로 설치)을 위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전인 8월22일 사용승인요청에 의하여 8월 24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므로 인하여 (주)소풍에서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특혜인지 ?
 - 제142회 부천시의회(2008.03.19) 시정질문시 당시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보행통로의 폭이 6m에 길이가 300m로 우범화 등의 우려가 있어 정책적으로 별도 해결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별도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
 - 흥건포 시장은 2차분 10억원이 미납된 당시, 부천터미널(주)소풍의 회장소유인 미얀마 골프장에 부천시 체육회 임원들과 부천터미널 소풍 회사의 회장과 함께 미얀마 여행길에 동행하여 골프외유를 다녀왔으며, 그 후 부천터미널(주)소풍은 단 한차례도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시 집행부서에는 (주)소풍 봐주기로 일관된 행정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지 ?
 - 시장의 독선적 행정지시와 결정으로 부당행정행위로 인한 부천시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본 의원의 요구대로 시민과 의회에 사과할 뜻이 있는지 여부와 감사원에서 통보된 관련 공무원 해임 징계요구서 등은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
 - 부천터미널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건과 유사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 건에 대해서만 이행각서로 대체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행각서체결과 관련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

(답 변)

- 류중혁 의원, 윤병국 의원, 류재구 의원, 김관수 의원, 강동구 의원님께서 감사원이 부천시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요청한 내용과 이행보증금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서는 2007년 8월 당시 부천터미널(주)에서 이행해야 하는 지하보행통로 설치 완료시점(지하철 완공시, 2010년 12월 준공예정)과 부천터미널 건축물 완료시점(2007년 8월)의 차이에서 오는 공사시기의 불일치(3년 이상)로 인하여 (신)부천터미널(여객시설)시설의 이용 지연으로 인한 (구)터미널 시설이용에 따른 대중교통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부천터미널 부대시설 상가내에 입점해야할 시민들의 입점지연에 따라 상업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 2007. 08. 13. 부천터미널(주)에서 제출한 “부천터미널과 756정거장(지하철7호선)간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각서”를 접수하고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2007.08.17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시 이행보증보험증권과 현금납부(이행보증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하보행통로 설치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으로 가름하여,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 의결된 의결사항을 토대로 부천터미널(주)에 승인통보를 하였음
 - 이행보증금은 부천터미널로부터 받아서 시에 귀속시키는 세입(세금)이 아니라 돌려주어야 하는 보증금 성격으로 분납요청은 이행각서의 부가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여 신속한 이전을 위해 분납처리 하겠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명하게 처리한 사안이므로, 지하보행통로 이행보증금에 대한 분납승인은 부천터미널(주)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새로운 터미널을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조치였음

- 또한 부천터미널(주) 이행보증금 미납과 관련하여 부천터미널(주)측에 미납금에 대한 이행 촉구 및 불이행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14회나 발송하였으며, 현재 법적조치를 통해 부천터미널을 대상으로 2009. 4. 27. 채권가압류 결정, 2009. 4. 3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고, 2009. 5. 15. 본안소송(약정금 등 청구)을 제기하여 이행보증금 미납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특혜를 줄 의도는 전혀 없으며, 현재 우리시가 확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 채권은 부천터미널(주)가 한국자산신탁(주)와의 신탁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7호의 처분대금잔여금, 신탁계약서 해지·종료시의 이전등기 청구권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탁자산이 미납 이행보증금보다 훨씬 크므로 이행보증금은 확보될 것으로 판단됨
- 부천터미널(주) 건축물 사용승인에 있어 감사원 감사처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자문한 결과 지하보행통로 설치완료시점과 부천터미널 건축물 완공시점의 차이에서 오는 공사시기의 불일치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을 때 건축물의 노후화, 2007. 8. 29. 까지 (구)버스터미널의 임대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신)부천터미널 사용개시의 시급성, 건축물 사용승인 지연에 따른 (신)부천터미널에 입점할 시민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한 사항인 점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시장이 버스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천터미널을 건축하는데 민간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시의 예산을 약 450억원을 절감한 점 등을 고려하고 우리시가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이행보증금 미납 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지하보행통로 설치 완료시기가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 완료시기인 2012년까지 연장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과중한 처분이라는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특혜의혹에 의한 업무상 배임혐의 처분결과는 타당하지 않아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송비용은 본안소송 추진시 우리시가 승소할 경우 피고(부천터미널(주))가 부담하도록 조치하였음

○ 다음, 류중혁 의원님께 제142회 부천시의회(2008. 3.19.) 시정질문시 답변 드린 지하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우범화 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선 과천 정부청사역 지하보도, 동인천역 지하상가, 인천터미널역 지하보도, 영등포역 지하상가, 대구 반월당 지하상가, 부산 덕천~숙등간 지하상가 등의 타도시 유사시설들을 벤치마킹하여 지하보행통로 설치시 우범화,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검토사항은 사업자가 지하보행통로 설치시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미납된 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현재 법적조치를 하고 있음

○ 다음, 윤병국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2008년 2월 미얀마 골프외유건과 김관수 의원님께서 2008년 2월 미얀마 골프외유건과 연계하여 부천터미널(주)소풍에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과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미얀마 골프외유건은 이미 작년에 골프외유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 휴가를 이용하여 항공료 및 경비를 부담하면서 2010년도 경기도체육 유치를 앞두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회 회장단의 결속을 다지는 워크숍이 주목적이었으므로 어떠한 향응이나 특혜시비가 없었음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혐의 판결로 밝혀진 상황에서 금번에 본 감사원 처분요구와 다시 연계하여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감사원의 특혜의혹에 의한 업무상 배임혐의는 우리시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재심의 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절차에 의거(경기도인사위원회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실적인 대응을 실시할 계획임

○ 다음, 강동구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 하신 통상 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 건에 대해서만 이행각서로 대체한 이유와 이행각서체결과 관련하여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본 건을 이행각서로 대체한 이유는 2007. 8.13. 부천터미널(주)에서 제출한 “부천터미널과 756정거장(지하철7호선)간 지하보행통로 개설을 위한 이행각서”를 접수하고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2007. 8.17.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시 이행보증보험증권과 현금납부(이행보증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하보행통로 설치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이행 확인으로 가름하여, 부천터미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의 의결된 의결사항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시장방침을 받아 처리한 사항임

□ 질문의원 : 류중혁 의원

- 송내 북부역의 노점상 및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 송내 북부역의 노점상 문제의 해결책은 없는지 ?
 - 인도에 불법 주차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모 인터넷 신문기사 후의 조치는 어떻게 취하였는지 ?

(답 변)

- 송내 북부역의 노점상 문제의 해결책과 불법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송내역 광장을 무질서하게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단속 시에만 정비되었다가 재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지속적인 계도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하였지만 근절되지 않는 실정으로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천역, 송내역 광장 노점상 허가제 도입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타 시의 벤치마킹과 운영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세부적인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을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함
 - 지역 인터넷 신문에서 광장 내 상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기사화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점상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신문 보도 후 상시 주차하고 있는 차량 9건에 대하여 스티커로 발부하였고, 임시 정차 차량 12건은 계도 조치하였으며, 또한 상습노점 행위자 6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음
 - 앞으로도 광장 내 노점 차량이 방치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질문의원 : 김원재 의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 교통약자 현황은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저상버스의 운행기준 충족여부는 ?

(답 변)

- 교통약자 현황은 ?
 - 2008년 현재 부천시 인구 871,781명 중 장애인 32,459명, 고령자 62,034명, 임산부 8,602명, 어린이 48,025명, 영유아 41,412명 등 총 192,532명으로 시 전체인구 대비 22%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저상버스의 운행기준 충족여부는 ?
 - 2008년말 시 전체 버스운행대수는 657대이며, 이중 저상버스는 16대임
 - 향후 2009년 14대, 2010년 30대, 2011년 56대 도입을 추진하여 2011년 까지 총 116대를 보급할 계획임

□ 질문의원 : 박종국 의원

- 중동 1152번지 앞(문예회관부지) 사거리와 공영6호주차장 사거리에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용의는 ?

(답 변)

-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는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지점과 단속요청 민원이 발생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교통정보센터에서 2006부터 2013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2단계가 추진 중에 있으며 부천역등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42개가 설치 운행 중에 있음
- 추가 설치방법은 도시미관과에서 수요조사 및 각종 민원이나 교통흐름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교통정보센터에 설치 요청을 하면 타당성 조사 및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설치를 하게 됨
- 중동 1152번지 앞 문예회관 부지 사거리 소양길은 고층아파트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주상복합건물 사이에 위치한 왕복4차선 도로로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교통 혼잡도가 높은 도로이며 그린타운 우성,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학원차량, 택시, 상가차량 등 불법차량들로 민원이 잦은 지역임. 특히 단속시간 이후인 저녁9시 이후에 학원차량들의 상습주차로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고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지역임
- 공영6주차장 사거리는 번영로 구간으로 고층아파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위치한 4차선 도로로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혼잡함. 먹자골목과 연결되어 상가를 찾는 시민들이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으로 렉카차, 택시 등 불법 주차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특히 공영주차장 입구가 상가 안쪽에 있어 골목 안쪽 길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고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을 병행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을 감안하여 중동1152번지 앞 사거리와 공영6호 주차장 사거리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고정식 CCTV 설치를 추진하겠음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이동지원센터를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 ?
 - 장애인복지택시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50대 기준을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 ?
 -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차량을 장애인복지택시와 통합운영 시 타당성은 ?
 - 시내 주요지점을 순환하는 장애인버스 운영을 검토할 의향은 ?

(답 변)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조례 제정과 이동지원센터를 언제쯤 시행할 예정인지 ?
 -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동지원센터는 2010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음
- 장애인 복지택시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한 50대 기준에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 ?
 - 현재 8개 택시회사에 있는 장애인 복지택시를 금년 중에 기부체납을 받고, 2010년, 2011년 각 3대씩의 택시를 추가 확보 하겠으며, 향후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차량을 장애인복지택시에 통합운영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
 -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8대이며, 각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음

- 향후 통합운영방안에 대하여는 해당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음

○ 시내 주요지점을 순환하는 장애인버스 운영을 검토할 의향은 ?

- 일반 시내버스로는 운행편의가 불편한 관계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 복지부서 등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질문의원 : 윤병국 의원

-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 부천고속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확대를 위한 그 간의 노력은 ?
 - 부천무역(주)에서 관리하던 버스정보안내기의 처리방안은 ?
 - 시내버스 노선안내도의 주기적인 정비방안에 대한 대책은 ?
 - 지하철7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검토사항은 ?
 - 인천소속 시내버스에 대한 버스안내 정보 및 환승할인은 언제 가능한 지 ?

(답 변)

- 부천고속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확대를 위한 그 간의 노력은 ?
 - 현재 고속버스 1개 포함 64개 시외버스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며, 터미널 운영업체인 이노라인(주) 관계자와 시외버스를 고속버스로의 전환과 인천공항을 연계하는 노선신설 등 시외 및 고속버스 노선유치에 우리시가 행정지원을 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겠음
- 부천무역(주)에서 관리하던 버스정보 안내기의 처리방안은 ?
 - 2009년 6월부로 부천무역(주)와 공동 유지관리 했던 (구)시티젠 대표와 시설물 관리에 대한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2009년 7월 중순부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버스정보안내기를 관리하기로 계획됨
- 시내버스 노선안내도의 주기적인 정비방안에 대한 대책은 ?
 - 현재 버스노선안내도 정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노선안내도에 불법부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정비를 하겠음

○ 지하철7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검토는 ?

- 지하철7호선 개통시 교통여건의 변화로 현행 버스노선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버스노선 전반에 대하여 조정할 계획임

○ 인천소속 시내버스에 대한 버스안내 정보 및 환승할인은 언제 가능한 지 ?

- 광역버스 정보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10년에는 수도권 교통본부 주관으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간 버스정보 및 환승할인을 위한 정보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간 버스정보연계는 정보연계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0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시내버스 이용 시 환승할인은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임

□ 질문의원 : 오세완 의원

-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간 지·정체 완화 개선 방안은 ?
 - 장수~계양간 지·정체 개선방안에 대하여 부천시가 제시한 사항은 무엇이며,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내용과 차별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
 - 장수~계양간 지·정체 개선방안에 대한 서울외곽도로 주변 시민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시는 주민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

(답 변)

-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간 지정체 완화 개선방안은
 - ① 서창~장수간 고속도로 및 장수요금소 신설을 통한 장수I.C 유출입교통량 감소,
 - ② 장수~계양간 Express차로 및 Up-Down램프 설치로 장수~계양간 통행속도를 개선하고 램프 설치로 지역접근성 향상,
 - ③ 하부도로 단절 구간인 중앙병원앞사거리~순환삼거리까지 1.6km, 도약길~굴포천~봉화로 구간까지 2.3km, 경인고속도로 연결램프 설치를 통해 단거리 교통량 분산,
 - ④ 장수~중동구간 5개소에 램프미터링(RMS)을 시행하여 고속도로 진입 교통량 제어하는 방안임

- 2009년 5월 2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간 지정체 완화 실행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안) 통보 및 우리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 받아 2009년 6월 5일 시장님 주재로 도의원님, 시의원님 및 관계기관 분들을 모시고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음
- 설명회 개최시 시물레이션을 통한 설명자료 보완 및 우리시 건의사항(우리시 구간 지하화, express차로 운영시 3,4차로를 통해 송내IC, 중동IC를 유출입 통행량 관련 용량분석 필요, 고속도로 본선에 갓길 차로제 운영, 하부도로 유입 교통량 최소화, 환경문제, 동서축을 횡단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을 전달받아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시물레이션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2차 설명회 개최 후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최종 우리시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임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구도심 쓰레기 (전단지, 불법간판 등) 문제에 관하여 ?

(답 변)

-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전단지는 차량 등을 이용한 집중적 살포와 교묘한 방법으로 살포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단지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희망근로, 공공근로자를 지역별로 배치하여 지속적 수거와 정비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등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단속해 나가겠음
- 시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 등은 단속을 피해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별로 현장 상주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조치로 깨끗한 거리질서가 확립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상반기까지의 단속실적으로는 전단지 134,259건, 입간판 680개를 수거하였으며, 상습적·반복적인 광고물 53건은 8,6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질문의원 : 김문호 의원

- 전신주를 이용하는 업체 및 전신주를 이용하는 통신선을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강구 ?

(답 변)

- 우리시가 도로점용을 허가한 전신주는 한전, KT 등에 26,594기이며, 이중 한전은 13,879기를 다시 13개사의 통신업자에게 임대하여 통신선으로 사용하고 있음
- 한전에서는 통신선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합동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차로 2010년 7월까지 1,361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52%의 정비가 추진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 한전 및 KT에서는 여러 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제정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방치시 위험초래 및 미관저해의 등 정비 필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정비요구 및 독려해 나가겠음

□ 질문의원 : 류재구 의원

- 부천남부역 광장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 첫째, 택시 대기선 부족으로 국도변을 막는 일이 많은데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
 - 둘째, 광장에서 인천쪽 방향 진입시 가판대와 한전 배전박스 때문에 시야가 가려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데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
 - 셋째, 광장확장 추진시 주차장 사업과 함께 추진되었는데 시행치 않는 이유와 언제 할 것인지 ?
 - 넷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매각은 지하주차장 공사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 다섯째, 교통시스템을 사거리 개념으로 돌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하도 입구를 차량진입로 밖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언제 시행할 것인지 ?

(답 변)

- 부천 남부역 광장조성 사업은 협소하고 낙후된 역광장을 확장하여 교통 혼잡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제공, 보행환경 개선, 잔디광장 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남부광장에 진입하는 택시들이 국도변까지 정차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번 광장을 조성하면서 택시전용차선 2개 차로를 확보하였으나 택시들이 한줄로만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택지조합 및 남부경찰서에 2009. 6. 18.자로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택시전용차선 2개 차선의 활용을 요청한바 있으며, 향후 2개 전용차선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광장의 출구에 인접하여 운전자들의 시선을 저해하는 지장물인 구두박스과 한전 배전박스에 대하여는 부득이 2009년 8월경 광장 앞 전주지중화사업 완료와 동시에 운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적정 장소로 이전 조치 할 계획임

- 당초 남부광장 조성 계획시에는 광장 지하 주차장을 설치코자 계획하였으나 지하에 지하도상가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할시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우선 지상에만 탁트인 광장을 조성 하였습니다. 향후 주변의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영주차장 매각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심곡본동 550-10번지 사유지로 2008. 3. 4일 제14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의결된 사안으로 그동안 남부역 광장 조성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작업 등으로 매각이 지연 되었으나 향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후 조속히 매각할 계획임
- 교통시스템을 사거리 개념으로 바꾸고 지하도상가 입구를 차량진입로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4지교차로에서 3지교차로로 변경하여 넓은 잔디광장을 확보한 만큼 향후에 지역 환경 변화와 장의 재 조성 필요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민간투자사업 제4호, 제6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향후 시의 대책은 ?
 - 제1호, 제2호, 제15호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편성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
 - 공영주차장은 시가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시설을 확장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
 - 제6호주차장 입구 일방통행도로를 부분해제 하여준 과정과 이유는 ?
 - 제6호주차장 앞 중동먹자골목 노상주차 57면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이 있다면 그 이유는 ?
 - 제6호주차장 출입구 일방통행 해제부분 재검토할 의향은 ?
 - 제6호주차장 1층 상가 전면에 설치한 마루시설물(테라스)을 시정 조치 안하는 이유는 ?

(답 변)

- 우리시는 '94년 중동신시가지 개발당시 공영주차장이 조성 되었으나, 근린생활권의 중심상업지역에는 현재 주변 도시개발로 인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비하여 주차시설의 규모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은 크게 우리시에서 직접 재정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있으나 우리시 중심상업지역내에서 주차장 1면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약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의 예산으로 모든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다른 방법은 민간투자유치사업 방식에 의한 것임
민간투자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시 제4호, 제6호 공영주차장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제1호, 제12호, 제15호 주차장도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상태임

-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시에는 기존 노외주차장의 3배 이상으로 주차면수가 확보되어 미래 주차수요에 대비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SOC)을 유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내 고용창출 등에 많은 도움이 되어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정책임
- 시의 모든 자산은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하며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는 것 임. 주차장의 경우 평면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와 활용도 면에서 낭비가 많은 것 임. 지하와 지상을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절대 필요함. 시의회의 부결은 이러한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제6호 공영주차장은 원미구 중동 1129-3번지 중동먹자골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 92면의 주차면수가 있었으나 민간투자사업으로 148면이 증가한 240면의 공영주차장이 되었으며 주차장 입구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주차장 출입시 이용자의 불편민원이 제기되었고 또한 야간에는 2열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경찰서 및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후퇴한 도로를 이용하여 전용진입로를 설치한 것이며 기존의 일방통행 도로에 대하여는 변경한 것이 아님
- 또한, 제6호 공영주차장 앞 중동먹자골목 노상주차장 57면은 현재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계획은 없음
- 제6호 공영주차장 1층 점포 전면에 설치한 마루시설물(테라스)은 인도에 설치한 것이 아닌 대지내의 공지에 설치한 것으로 건축법 및 관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시설물임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지정벽보판의 민간자본유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 민간자본유치 위탁관리 운영중인 지정벽보판중 GS백화점 앞 외 2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입체형 사각벽보판이 시민의 통행이 혼잡한 인도 한복판에 설치되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음.
 - 모두 180개(평면 160개, 입체 20개)의 지정벽보판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시민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 ?
 - 보도에 설치된 입체형벽보판을 평면벽보판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 광고물 민간위탁관리 현황 자료 제출.

(답 변)

- 2009. 6. 16일 지정벽보판(180개) 전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입체형 사각벽보판은 인도(2m)와 자전거도로(3m)의 중앙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 좌우로 여유 있는 보행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음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정벽보판 전체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보도에 설치된 입체형 사각벽보판을 평면벽보판으로 일괄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향후 지역여건의 변동 등으로 벽보판이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청하는 민원 등이 발생시에는 현장을 조사하여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민간위탁관리 광고물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음
 - 일반 시민용 현수막게시대 : 120개
 - 위탁기간 : 2008. 02. ~ 2011. 01 (3년)
 - 위탁기관 : 애드게이트 김영애
 - 지정벽보판 : 180개(평면 160개, 입체 20개)
 - 위탁기간 : 2009. 04. ~ 2012. 03 (3년)
 - 위탁기관 : 한국통운 대표 오중석

□ 질문의원 : 김관수 의원

- 관외택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 부천시계 구간인 오정구 고강동, 원미구 상동, 소사구 송내동 및 역곡동 주변에 타시 택시들의 불법주정차가 매우 심각함. 이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는데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

(답 변)

- 우리시에는 개인택시 2,474대, 회사택시 988대등 총 3,462대의 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승객의 감소 등으로 택시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더욱이 우리시 경계지역 특히 역곡 남부역에는 서울, 인천 등 관외택시가 뒷 트렁크를 열어놓고 오랜 시간 불법정차하며 택시 승객을 유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관내택시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이동식카메라 단속차량과 단속원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고정식CCTV를 이용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겠음

□ 질문의원 : 변채옥 의원

- 역 광장 노점상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 역 광장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의 경우 도로법의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타 자치단체(서울, 고양, 파주시)의 예를 거울삼아 아름다운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
 - 2009년 현재까지 집행된 용역비와 노점상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소요 예산은 ?
- 중동 GS백화점 주변과 상동 세이브존 주변, 상동 홈플러스 주변의 불법 유해 광고물의 실효성 있는 단속 계획은 ?
- 불법 간판 단속실적에 대한 자료와 광고업자 교육 실적은 ?
- 계남대로 일부구간과 같이 간판정비 계획이 있는지,

(답 변)

- 역 광장 노점상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엄격한 법 집행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데 묵인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강제단속과 수거, 과태료부과 및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노점상이 근절되도록 행정조치 하였지만, 단속 후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천역, 송내역 광장의 노점상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5. 4일자 T/F(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기존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마포구, 고양시, 광명시 등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세부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 현재까지 집행된 노점상단속 용역비는 32억 2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노점상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예산은 6백8십만원이 집행되었음
- 중동 GS백화점 주변과 상동 세이브존 주변 불법 유해광고물의 실효성 있는 단속계획에 대하여는, 중·상동 상업지역을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선정성 유해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 하겠으며, 지난 6. 19일과 7. 3일에는 문화시민운동과 연계하여 도시미관과 전직원과 민간단체 및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동 세이브존 일원 상업지역에 불법 광고물 160건, 노점상 12건, 노상적치물 68건을 일제정비를 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유해광고물 및 불법광고물이 근절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음
- 불법 간판 단속실적과 광고업자 교육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년 상반기까지의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은 현수막 39,125개, 입간판 680개, 벽보 84,874건, 전단지 134,259건을 현장정비와 강제수거로 단속 하였으며, 또한 자율정비 계고에 불응한 광고물과 상습적·반복적인 불법광고물 53건에 8,600천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광고업자 교육실적에 대하여는, 불법광고물 난립과 옥외광고업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2008. 7. 1~7. 9일간 경기도 옥외광고 협회에 위탁하여 교육대상자 176명중 169명이 이수하였으며, 미이수자 7명은 과태료 처분하였음
- 계남대로와 같이 간판정비를 확대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원미구 심곡동 349번지에서 심곡동 424번지(중앙로~부천대학)까지 건물 42동에 간판 215개를 교체·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주민설명회 개최와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경 착수하여 12월 말까지완료 할 예정임

□ 질문의원 : 변채옥 의원

- 부천 전역에 설치된 블라드와 무단횡단 금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웬스의 모습이 일관성이 없음. 친환경적으로 일관성 있게 설치할 용의는 ?

(답 변)

- 우리 시 전역에 설치하고 있는 블라드 및 보행자 안전 웬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는 있으나, 시설물별 재질과 디자인이 각각 달라 일관성이 없고 도시미관에 저해 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임
- 앞으로 도시시설물 설치시 우리 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시미관과 주위 환경이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예술성을 고려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질문의원 : 강동구 의원

-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하여 ?
 - 정기점검은 년 몇 회 이루어지고 있는지 ?
 - 이상유무 확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 오작동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

(답 변)

- 정기점검은 년 몇 회 이루어지고 있는지 ?
 -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인력 3명이 정보오류 및 시스템 이상 유무에 대해 버스정보안내기 전체 점검대상 55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50여 개소씩 일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장비별로 기본적인 점검 항목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수시 및 긴급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점검을 통해 조치하고 있음
- 이상유무 확인방법
 - 버스정보안내기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버스정보안내기 장애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유지보수인력 3명이 매일 점검하고 있음
- 오작동 발생원인 및 대책
 -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작동으로는 위치정보오류, 전원 OFF, 정보표출 멈춤 장애가 전체장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주요 장애발생 원인은 장비들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이며 대책으로는 '09년 버스정보안내기 71개소 교체 및 신규설치를 비롯하여 '10년에는 잦은 민원요청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신규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원미구보건소>

□ 질문의원 : 김원재 의원

- 여성장애인 산후조리 지원과 관련하여
 -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에 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지금까지 여성장애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실태는 ?
 - 여성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제도를 적극 도입 시행할 의향은 ?

(답 변)

- 부천시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산모도우미지원사업은 모든 여성장애인 산모에 대해서는 재산과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관련 의료기관·주민자치센터·콜센터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
- 참고로 여성장애인 산모에 대한 지원기준은
 - 장애등급 2급 미만의 산모에게는 도우미 2주 지원(본인부담 46,000원)을 실시하고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산모에게는 4주(본인부담금 46,000원)의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음

<감사실>

□ 질문의원 : 이환희 의원

-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하여
 - 첫째 완벽한 설계,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시스템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 둘째 설계도면, 설계서, 시방서등 공사관련 자료를 저장 및 공유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 셋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제, 또는 관급공사 성실시공에 따른 준공검사 팀 가동할 용의는 ?
 - 넷째 시 및 각 구청에서 2009. 1월부터 6월말까지 발주한 일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내역서 및 도급계약서(하도급 계약서포함) 제출

(답 변)

- 첫째 완벽한 설계,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시스템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과
- 둘째 설계도면, 설계서, 시방서등 공사관련 자료를 저장 및 공유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급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3 (설계 등의 표준화)규정에 의거 관급공사의 비용절감, 시설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완벽한 설계와 견실한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기준, 최상급 품질확보와 적정성 공사관리 등을 반영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을 작성하며,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주민대표자 또는 추천자를 “주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하여 현장 감독업무를 담당공무원과 공동 수행하고 있으며
-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또는 저가하도급 계약방지를 위하여,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함은 물론 관행적 불법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임

○ 셋째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제, 또는 관급공사 성실시공에 따른 준공검사 팀 가동할 용의는 없는지

- 「부천시 일상감사시행지침」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시 본청 및 사업소, 각 구청과 직속기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하여 각종 공사를 비롯한 용역과 물품구입 등 주요사업전반에 걸쳐 사전 일상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 2009. 7. 1일부터는 대상사업을 종전 5억원(도급액 기준)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 확대 시행함으로써, 부실공사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시설공사의 준공검사는 「부천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6조(검사공무원의 임무)에 의거 각종 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품질관리기준대로 엄격히 시공되었는지 여부의 준공검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넷째 시 및 각 구청에서 2009. 1월부터 6월말까지 발주한 일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내역서 및 도급계약서(하도급 계약서포함) 제출

-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음